

#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1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12일, 장규권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1월 2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사회적 현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정착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로 변경함.
- 2)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4)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5)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6) 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7) 홍보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 나. 검토의견

##### 1)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급속히 증가되는 1인 가구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음

#####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1인가구의 용어 정의를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의를 적용하여 명확히 규정함

현행 조례	개정안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금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1인가구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

마)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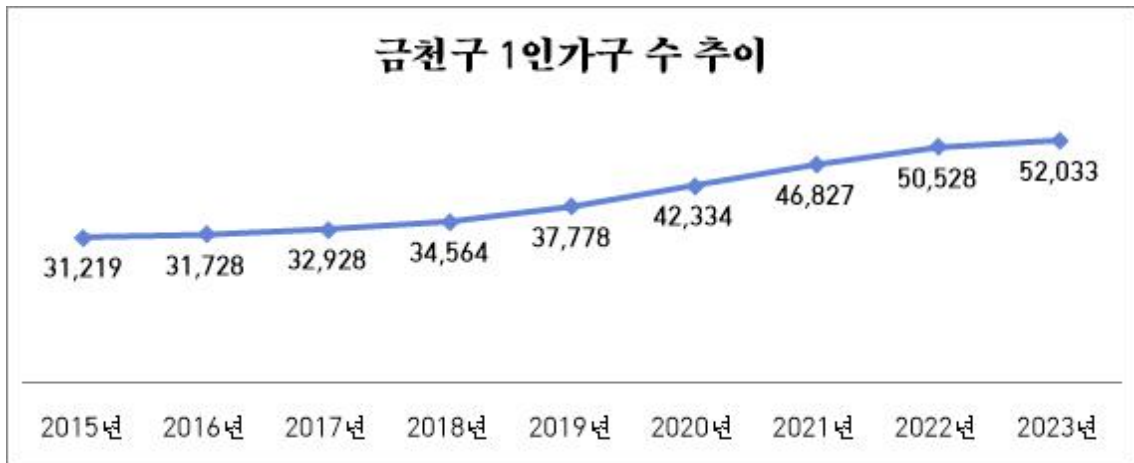
바) 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협의체 운영으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근거를 마련함

사) 홍보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3) 검토 의견

-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는 2017년 제정된 이후 개정된 내역이 없이 현행을 유지하여 왔으나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에 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금천구 1인가구 수 추이

- 본 개정안은 다각도의 정책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재정비하여 1인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